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317호 2014. 1. 14.(화)

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2014-48호 조례제정·개폐 및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 등 공표 —2
- 사천시 공고 제2014-49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—————3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편집 : 기획감사담당관실 ☎ 831-2215·FAX 831-6011

사 천 시 공 보

제317호(2)

공 고

사천시 공고 제2014-48호

조례제정·개폐 및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 등 공표

지방자치법 제15조의1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과,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.

- 다 음 -

구 분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	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	비고
	94,402명	1,888명	

2014. 1. 14.

사 천 시 장

사 천 시 공 보

제317호(3)

사천시 공고 제 2014-49호

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

주민투표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- 다 음 -

구 분	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	주민투표 청구시 연서 주민수	비 고
	94,461명	10,496명	

2014. 1. 14.

사 천 시 장